

-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-

지정 운영 협약서



대구광역시
DAEGU METROPOLITAN CITY



대구대학교

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운영 협약서

「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『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』를 지정 운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장을 “협약당사자”라 하고,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구대학교 총장을 “협약상대자”라 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센터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“협약당사자”와 “협약상대자” 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기간 등) ① 운영기간은 「2023. 1. 1. ~ 2025. 12. 31.」까지로 하며 “협약당사자”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② “협약당사자”가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 전에 운영기관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③ 운영기간 종료 시 “협약상대자”는 “협약당사자”에게 비품 및 장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3조(센터의 업무)

① 「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평생교육 센터의 업무)에 관한 사항

②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운영규정 작성) ① “협약상대자”는 “센터”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① “협약상대자”는 운영규정에 다음 각 호의 1을 명시하여야 한다.
1. 목적, 사업 종류와 내용
 2. 운영위원회 설치, 위원 수, 의무사항, 보고사항, 회의방법, 개최횟수
 3. 시설이용과 관련한 이용 대상, 이용자 선발 및 방법, 이용기간, 이용료 징수
 4. 이용료 수입에 대한 사용계획 및 지출 방법

5. 인사관련(직원 및 강사채용, 급여, 복무 등) 사항
 6. 시설 및 장비의 운용, 안전관리 계획
 7.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, 사업실적 및 결산(정산) 보고
 8. 기타 위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운영 전반
- ② 위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“협약당사자”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, 운영규정 변경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“협약당사자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사업계획서 등 작성) ① “협약상대자”는 “센터”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제출하고, “협약당사자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추후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“협약당사자”에게 변경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“협약상대자”는 “협약당사자”에게 “센터” 운영 보조금을 분기별로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, “협약당사자”는 이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.

③ “협약상대자”는 “센터” 운영 보조금 등 사용 내역을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, 대구대학교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④ 비품 및 장비 목록은 “센터” 리모델링 및 장비 등 구비 이후에 별표 양식으로 제출 한다.

제6조(운영기관의 의무) ① “협약상대자”는 “센터”를 운영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 등 “센터”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협약상대자”는 보조금 및 장비 등을 “센터”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, 목적 외 사용·대여·교환·제3자에게의 담보제공·재워탁 행위 등을 할 수 없다.

③ “협약상대자”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임용시에 임·면일 7일 이내 “협약당사자”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산, 장비 등 관리) ① “협약상대자”는 “센터” 운영 시 “협약당사자” 소유의 모든 비품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파손,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2조의 운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·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“협약상대자”는 “센터” 지정 운영기간 만료 또는 협약 종료에 따라 “센터” 운영이 종료될 경우 “센터”를 리모델링 이전으로 원상복구 또는 이에 따른 비용을 “협약당사자”에게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.

제8조(안전관리책임) ① “협약상대자”는 “센터” 운영관련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적절한 수리 등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“협약상대자”는 운영기간 동안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, 건물화재 및 장비의 손해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계법령의 준수) ① “협약상대자”는 “센터” 운영에 있어 본 협약의 각 조항과 「사회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“협약상대자”는 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서의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“협약당사자”의 의견에 따른다.

제10조(지도감독 등) ① “협약당사자”는 “협약상대자”에게 “센터”의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실태 조사 및 장부 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“협약상대자”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협약당사자”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“협약상대자”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사업의 인계) ① “협약상대자”는 재지정 관련하여 “협약상대자”가 아닌 제3의 법인·단체가 운영기관으로 결정된 때에는 “센터”의 새로운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제3의 법인·단체에게 원만하게 인계하여야 한다.
- ② 운영기간의 만료, 협약의 해지 등으로 인한 기존 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“협약당사자”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.

- 제12조(약정의 해지) ① “협약당사자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협약상대자”는 “협약당사자”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.

1. “협약상대자”가 본 협약에 명기한 사항의 의무 및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
 2. “협약상대자”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 3. “협약당사자”에게 부득이한 이유로 “센터” 지정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
 4.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
- ② 제1항의 해지의 경우 “협약당사자”는 “협약상대자”에게 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③ “협약상대자”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“협약당사자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제3의 운영기관이 결정될 때까지는 “센터”를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협약 해지 시 보조금 및 수익금 정산) ①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“협약상대자”는 지체없이 협약 해지 시까지의 보조금 등 운영비에 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“협약상대자”는 보조금 등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“협약당사자”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협약의 효력)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이 협약에 의한 “센터”의 운

영에 관한 감사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감사의 완료 또는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.

동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협약당사자” 와 “협약상대자” 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12월 23일

협약당사자 : 대구광역시장 홍준표(인)

협약상대자 :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(인)